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9.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64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김0이	1985.4.22.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불인정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사감, 수취인·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이하 생략)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9.5. ~ 2022.9.19.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이정섭(Tel. 031-231-48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